

주주님께

##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 48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03월 19일(금요일)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

###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 1) 제 1 호 의안 : 제48기 (2020.01.01 ~ 2020.12.3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1주당 예정 배당금 : 50원
- 2) 제 2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별첨1]
- 3) 제 3 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중임) - [별첨2]  
제 3-1호 : 사내이사 배종민 선임의 건 (중임)
- 4) 제 4 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별첨2]
- 5)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별첨2]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지정,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증권대행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사항

당사는 「 상법 」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 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께서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주소 : 「 <https://evote.ksd.or.kr/> 」
- 모바일주소 : 「 <https://evote.ksd.or.kr/m> 」

나. 전자투표행사기간 : 2021년 03월 09일 오전9시 ~ 2021년 03월 18일 17시(상기기간중24시간이용가능)  
전자위임장수여기간 : 2021년 03월 09일 오전9시 ~ 2021년 03월 18일 17시(상기기간중24시간이용가능)

다. 인증서를이용하여시스템에서주주본인확인후의안별전자투표행사또는전자위임장수여

- 주주 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증권거래용인증서, 금융결제원개인용도제한용인증서 등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2항)

###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 7. 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 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본 주주총회시 기념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03월 0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35



문배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종민



[ 별 첨 1 ]

● 제 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 8 조의 2 [종류 주식의 수와 내용] 1) ~ 8) 생략</p> <p>9)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8 조의 2 [종류 주식의 수와 내용] 1) ~ 8) 좌동</p> <p>9) 삭제</p>	<p>제10조의3 개정에 따라 삭제</p>
<p>제 10조의 3 [신주의 배당 기산일]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 10조의 3 [동등배당] <u>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u></p>	<p>개정상법 적용(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p>
<p>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 3) 생략</p> <p>4)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 11 조 [명의개서대리인] 1) ~ 3) 좌동</p> <p>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u>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u></p>	<p>전자등록제도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가 사라진 현황을 반영</p>
<p>제 12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 3) 생략</p>	<p>제 12 조 [주주명부 기준일 및 작성 비치] 1) ~ 3) 좌동 4) ~ 5) 신설</p> <p>4)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5)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p>	<p>전자증권법 규정 내용 반영</p>
<p>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 4) 생략</p> <p>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 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 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3 조 [전환사채의 발행] 1) ~ 4) 좌동</p> <p>5)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u>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p>	<p>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 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p>
<p>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 4) 생략</p> <p>5)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14 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 4) 좌동</p> <p>5) 삭제</p>	<p>제10조의3의 조정에 따라 배당 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p>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p>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p>	<p>제15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u>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u></p>	<p>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p>
<p>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생략</p> <p>2)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 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3)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 29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1) 좌동</p> <p>2) <u>이사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u></p> <p>3) <u>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u> <u>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수 있다.</u></p> <p>4) <u>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u></p> <p>5) <u>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개정 상법 제409조 제 3항 반영 개정 상법 제542조의 12 제 7항 반영</p>
<p>제 31조 [ 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 2) 생략</p> <p>3) 사외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한다.</p>	<p>제 31조 [ 이사 및 감사의 보선] 1) ~ 2) 좌동</p> <p>3) <u>삭제</u></p>	<p>제 28조 제2항과 중복으로 삭제</p>
<p>제 44 조의 2 [중간배당] 1) ~ 3) 생략</p> <p>4) 사업 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 44 조의 2 [중간배당] 1) ~ 3) 좌동</p> <p>4) <u>삭제</u></p>	<p>상법 개정(배당기산일)</p>

[ 별첨 2 ]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중임)

□ 선임 이사 : 1인 (중임 : 1인)

□ 이사 후보자 명단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 의 관계	임기
사내이사(중임)	배종민	문배철강 회장(現)	이사회	없음	본인	3년

● 제 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중임)

□ 선임 감사 : 1인 (중임 : 1인)

□ 감사 후보자 명단

구분	성명	주요약력	추천인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와 의 관계	임기
감 사(중임)	김진호	세무사	이사회	없음	없음	3년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당기 한도승인 요청액 : 20억원(전기 한도승인액 : 15억원)

- 이사의 수 : 총 3인(중 사외이사 1인)

# 주 총 참 석 장

일 시 : 2021년 3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단재홀  
제48기 문배철강(주)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  
문배철강(주) 제48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소유주식수 :

주민등록번호 :

주 주 명 :

-----  
※ 대리인 위임장

대 리 인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



문 배 철 강 주 식 회 사

